



서대문구



수신자 내부결재
(경유)

제목 타기관적발 법규위반 대상자 행정처분(3월)
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량으로 적발된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하여 사전처분 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.

□ 관련근거

-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(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) 및 제49조(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)
- 같은 법 시행령 별표5 및 별표6

□ 행정처분 등 처리내역 (세부내역 : 붙임) : 총 6건

구분	과징금		과태료		처분불가	기타 (공고)
	건수	금액(천원)	건수	금액(천원)		
택시	4	900	2	100	0	0

붙임 : 타기관적발 법규위반 대상자 행정처분 내역서 1부. 끝.

주무관 **임주홍** 운수지도팀장 **최영식** 교통관리과장 **대권세춘** 안전건설교통국장 03/18 **代 김홍길**

협조자

시행 교통관리과-7604 () 접수 ()

우 03718 서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/ <http://www.sdm.go.kr>
 전화 330-1875 /전송 / jumks21@sdm.go.kr / 부분공개(6)